

의학과 프라이버시의 제문제

- AIDS 보도를 중심으로 -

西俣總平

일본 교토통신사 논설위원

이 글은 일본신문협회가 발행하는 「신문연구」에 실린 西俣總平 씨(일본공통통신사 논설위원)의 「의학과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제문제를 번역한 것이다. 앞으로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AIDS 보도와 인권침해와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편집자 주

필리핀여성사건

의학을 중심으로 저널리즘이 프라이버시보호와 정면으로 충돌한 본격적인 사례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를 둘러싼 공방일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에이즈는 1981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환자발생이 공식으로 보고된 극히 새로운 전염병이다. 처음에는 병원체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었으나 어쨌든 남성의 동성애환자에 특유한 질환이라고 생각되어 한때 일본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판단, 미국내의 만연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처럼 보는 풍조가 강했다. 그런데 1985년 3월 22일자 후생성이 일본에서의 환자발생 제 1호를 인정하면서 에이즈는 크게 사회적 주목을 끌게 되었다. 특히 1986년에서 1987년에 걸쳐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속발, 사진주간이지 등을 포함한 보도경쟁으로 마침내 에이즈보도의 방식에 대해 커다란 의문이 던져지게 되었다.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란 1986년 11월 에이즈에 감염된 필리핀여성의 일본내 대재, 1987년 1월 신하시에서 있었던 최초의 여성환자사망, 1987년 2월 高知시에서 일어났던 에이즈감염 주부의 임신을 둘러싼 보도경쟁이다. 이러한 보도에는 교토통신도 당사자로서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자성의 뜻으로 이 케이스들을 돌이켜 보고 앞으로의 보도방식 및 프라이버시와 인격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다.

1986년 11월 3일 교토통신은 마닐라 지국발로 『필리핀인 호스테스 에이즈 감염, 일본대재의 가능성도』라는 제목으로 기사 약 50행을 가맹사에 배신했다. 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마닐라수도권 케손시 당국은 얼마 전 호스테스를 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동시 출신의 필리핀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었음이 판명되었다고 주 필리핀 일본대사관에 이 여성의 추적조사를 의뢰했으며 만일 일본에 있을 경우에는 강제송환하도록 요청했다. 시당국의 요청에 의하면 이 여성은 케손시의 환락가에 있는 사우나탕에서 종사하고 있었던 스사 B 바라루아씨(연령불상)로 얼마 전 약 6백명의 <밤의 나비>를 대상으로 집단검진에서 단 한 사람의 에이즈감염이 판명되었다. 바라루아씨는 9월 20일께 일본에 건너갔으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나가노현 내의 나이트클럽에서 무용수 겸 호스테스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략) 이 고장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케손시의 에드몬드 카이모행정관은 일본에 가서 그녀가 여기서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에이즈를 옮기고 다닐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일본대사관 당국자는 '본부에 이미 보고를 끝냈다. 이 여성의 일본 내 소재장소가 확인되면 국외퇴거를 요구하는 일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한편 이 필리핀 여성을 주선한 마닐라주재 일본인업자는 '만일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에 전해지면 일본에 돈벌이가 있는 많은 필리핀여성이 과잉반응으로 박해를 받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과대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 교토통신기사가 배신된 직후인 11 월 4 일이 여성은 동경입국관리국에 출두하여 에이즈항체검사를 받은 다음 11 월 8 일 마닐라로 강제송환되었다.

실명보도와 오보

이 보도를 둘러싸고 교토통신은 문제가 되었던 필리핀여성의 이름을 공개한 일로 해서 프라이버시보호에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부에서 일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들로서는 실명보도(필리핀당국이 밝힌 이름이 실명인지 아닌지 그 시점에서는 몰랐지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나는 마닐라지국이 취재를 완료한 11 월 2 일 마닐라지국에 있었다. 「필리핀당국이 이름을 밝히고 본국송환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실명보도를 해야 한다 소재를 하루라도 빨리 밝혀주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은 그만큼 확대한다」는 것이 과학부장으로서의 내 주장이었다. 한편 마닐라지국장은 「실명보도를 하게 되면 필리핀여성전체가 있지도 않은 의심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을까」하고 반론했다. 논의는 상당기간 평행선을 그었으나 가령 「동남아여성」이라고 표현했을 경우 일본국내에서의 추적은 어렵게 되며 심지어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그 밖의 동남아국가의 여성 전반에 의심이 걸리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 최종적으로 실명보도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게 된 것이다. 마닐라발 공동전의 반향이 얼마나 컸었던가는 지면에 게재된 2 일 후에 문제의 여성의 소재가 판명된 것으로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松本市에서는 약 2 천명의 시민들이 에이즈항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위생당국에 몰려들었다. 경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는 한 사람도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지금도 나의 가슴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그 이유는 문제의 여성이 필리핀에 귀국한 후에도 일본의 일부 매스컴이 추적하여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오보를 하는 소란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오보를 정정하기 위해 더욱 더 그 여자를 추적하여 입장을 어렵게 만든 사태는 과연 없었는지. 그 여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권이 부당하게 손상되는 일은 없었는지. 그 계기가 교토통신의 보도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나 자신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AIDS 의 보도기준

다음으로 커다란 사회적 쇼크를 불러 일으킨 사건은 1987 년 1 월 신호시의 일본인 여성이 일본에서는 최초의 여성에이즈환자 제 1 호로서 후생성에 의해 확정된 일일 것이다. 이 여성은 신호시에서 외국인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매춘을 해 왔는데 같은 달 29 일에 사망하기에 이르러 사태는 단번에 커지고 말았다.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 일은 松本市의 사건, 신호시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국내 각지에서 「에이즈감염자로 판명」이라는

기사를 적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때마다 『00 현에서는 처음』이라는 제목으로 취급되어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 가운데는 얼마 뒤에 오보로 판명되어 정정된 케이스도 몇 개 있었다. 한 예를 들면 松本市에서는 필리핀여성으로부터 두 사람이 감염되어 에이즈항체 검사결과 양성으로 밝혀 졌다고 보도한 신문이 있었다. 진상은, 이 두 사람은 효소면역측정법(ELIZA 법)에 의해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나 확인을 위한 다른 검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음성, 최종적으로는 음성도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서 에이즈의 검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ELIZA 법은 다수의 혈액샘플에서 의심스러운 것을 선별하는 검사법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죽인 에이즈병원체를 혈청에 섞는다. 혈청 중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거를 나타내는 항체가 존재하면 항원항체반응이 일어나 혈청의 색깔이 밤색으로 변한다. 이 검사법은 에이즈에 감염된 양성자를 100%적발할 수 있다는데 장점이 있으나 반응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전혀 관계가 없는 음성자까지도 때로는 양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LIZA 법으로 경사한 결과 의심스럽다고 판정된 혈액은 IFA(면피형광측정법)과 웨스턴부롯드(전기영동법과 항원항체반응을 짜맞춘 방법)의 두 가지 테스트로 확인검사를 받는다. 요컨대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는지, 발병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ELIZA 법만의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모 신문과 같은 오보를 저지르게 된다 신호시에서도 중년여성 두 사람에게 대해 에이즈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보도되었다가 시당국이 교원병이라고 이례적으로 정정을 한 케이스도 있다. 에이즈보도를 함에 있어 우리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일본의 혈우병환이자 약 5 천명의 3 분의 1 에 해당하는 1 천 5 명이 바이러스로 오염된 수입혈액제제로 이미 에이즈에 감염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약사행정의 피해자이기도 한 이 사람들의 감염이나 발병은 원칙적으로 기사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며 이 원칙은 지금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스러운 선택

그런데 이 기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생겼다. 그것은 1987 년 2 월 高知현에서 있는 에이즈감염주부의 임신이다. 이 경우의 사정은 조금 더 복잡하다. 등장인물은 4 명. 첫번째 사람은 수혈용혈액제제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의 남성. 두 번째는 이 남성과 이전에 관계한 일이 있어 감염된 질부. 세 번째는 이 여성의 남편으로 감염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 월에 출산예정인 태아다. 이 태아의 부친은 첫번째 남성인지 두번째 남성인지 분명치 않으나 당사자인 임부는 출산을 강하게 원하는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사태였다.

교토통신이신 과학부의 출고기준에 따르면 이 네 사람 모두 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초의 생각이었다. 혈우병환자는 약사행정에 의한 불쌍한 피해자이며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개인적인 일은 뉴스화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어도 발병하지 않은 여성이나 미감염의 남편이나 태아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상밖이라고 생각했다. 설령 쓴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에 모자감염이 확인된 경우에 특수한 의학적 케이스로서 언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때에 2 월 16 일 주간지가

취재하여 근간 게재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으나 이 단계에서 흥미본위로 흐르기 쉬운 주간지의 움직임에 좌우되어 방침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그리고 일찍부터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지방의 가맹이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었다 사태가 급격하게 변한 것은 그날 밤 늦어서였다. 주간지의 움직임에 촉발된 중앙지가 취재하여 17일 조간에 게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교토통신만이 자숙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결과가 된다. 16일 밤의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가맹사에 급히 연락을 하고 출고하기로 했다. 당일 교토통신의 편집본부와 과학부가 연명으로 가맹사들에 낸 안내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에이즈여성임부에 대해 교토통신은 지금까지 추적, 취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① 감염시킨 남성이 혈우병환자라는 것, ② 임부 및 출생할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 ③ 신호의 경우와는 달리 타인에게 감염시킬 위험이 없다는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고를 보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16일밤 중앙 3지도 17일자 조간에 게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교토통신만이 자숙해야 할 의미가 상실되었다고 판단 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토통신편집국의 여지 편집본부장은 주보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선택에 들켰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응으로서는 하는 수 없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보아도 수상, 후생상의 발언이나 高知현 당국의 움직임은 조간을 읽고서야 나왔다. 가령 교토통신만이 쓰지 않았다고 했을 때 그 뒷수습이 귀찮았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통신사로서의 자세문제가 추궁되는 결과까지도 생겼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高知에서는 호외까지 발행한 사가 있었던 것은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7개의 원칙

高知의 사건을 계기로 교토통신사 내에서는 에이즈환자의 개인적 보도를 어떠한 통일된 기준으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되풀이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에이즈의 감염과 발병이 서서히 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케이스까지 다양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본사의 관련 각부와 지사 편집부의 의견을 집약했다. 검토단계에서는 에이즈 혹은 감염자의 인권보호우선과 에이즈만연방지 우선의 상반된 주장으로 달라졌으나 결국 쌍방주장의 접점을 찾아 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생각해낸 끝에 종전보다는 테두리를 넓힌 모양으로 의견을 집약했다. 이 견해는 1987년 2월 24일자로 『에이즈환자에 관한 개인적 보도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교토통신이 가맹사에 배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적으로는 환자 및 감염이자(항체보유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 혈우병환자로 수입혈액제제에 의한 일차감염이자, 환자에 대해서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 한 개인적 보도는 하지 않는다. 후생행정의 딱한 희생자로서 본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에이즈에 의한 사망시는 상황에 따라 보도한다. - 동성애 혹은 이성성행위에 의한 감염이자,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지위, 지명도, 직업 혹은 본인 이후의 감염확대의 우려 유무 등을 감안, 개인적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 - 혈우병환자로부터의 2차 감염자의 경우에도 사회적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개인적 보도를 하는 수가 있다. -개인적 보도의 경우 후생성 또는 도, 도, 부, 현의 발표인지의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가급적 기사에 쓰지

않는다. 성별, 연령, 큰 테두리의 직업 정도로 하며 주소는 부, 현 명까지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四國, 東北 등 블록지역명으로 그치게 한다. 다만 편집이 자주를 붙여 알고 있는 한도내의 직업, 동명 등을 붙인다. 예능인 등 저명인의경우에도 가명을 원칙으로 한다. - 감염자와 항체보유자의 분간에 대해서는 타의 감염증에 비해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염원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자를 주로 쓴다-이상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한다. 이상의 7개 원칙은 교토통신의 에이즈 보도 중 개인적 보도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다. 다만 원칙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예외가 있기 마련이어서 하나 하나의 케이스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예외일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은 에이즈의 개인적 보도를 함에 있어 인권보호와 프라이버시 존중에 큰 안목을 두고 있다는 점이며, 그 목적을 위해 취재출고부만의 독자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사내의 관련 부국이 반드시 협의하여 최선의 보도를 하기로 했다는데 있다. 高知의 거부가 출산한 아기가 다행스럽게도 모자감염되어 있지 않고 자택으로 돌아간 모자의 프라이버시가 지켜져 평온한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이 모자의 프라이버시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매스컴이 최대한의 배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권의식의 고양과 사회의 성숙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늘어갈 것이 자명한 에이즈에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적 토양이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